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단의 행사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준수사항과 불이행 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알뜰시장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합법화함과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 편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7.12.29.)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중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신고표시 부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3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7월 7일

발 의 의 원 : 이상복 의원

찬 성 의 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단의 행사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준수사항과 불이행 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알뜰시장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합법화함과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 편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7.12.29.)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중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신고표시 부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营业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영업신고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3조) 중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영업장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

(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 설>

공단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

<신 설>

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

<u><신 설></u>	<u>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u> <u>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u> <u>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제5조(영업신고표시) ① 시장은</u> <u>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u> <u>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u> <u>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u> <u>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u> <u>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u> <u>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u> <u>기재한다.</u>
<u><신 설></u> <u>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u> <u>에서 정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u> <u>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u> <u>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u> <u>영업을 할 수 있다.</u> <u>제4조 (생 략)</u>	<u>제6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u> <u>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u> <u>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u> <u>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u> <u>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u> <u>다.</u> <u>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 <u>----- 영업장소-----</u> <u>-----</u> <u>-----</u> <u>-----.</u> <u>제8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